

---

**「2016년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」  
통계자료 요청을 위한 설명 자료**

---

2016. 4.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# I. 연구개요

## 1 추진배경

-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나, 실태조사가 부재하여 성별, 가정·시설·지역사회 등 장소적 특성, 아동·성인·노인과 같은 연령 등을 반영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움.
- 기존 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상담통계를 성별로 구별하여 볼 경우 2013년~2015년 장애여성의 상담건수 증가폭이 장애남성에 비하여 높고,<sup>1)</sup> 상담 내용 역시 장애남성은 노동 및 경제적 학대 관련 상담이 다수인 반면, 장애여성은 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학대 관련 상담이 다수로 성별 특성이 감지됨. 특히 학습이 곤란하고,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의 신체자유권리 관련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남.<sup>2)</sup> 나아가 성폭력·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신고비율이 낮고,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의 폭력 피해여성 지원기관이 주로 담당하여 통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.<sup>3)</sup>
- 더욱이 장애여성의 경우 습관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고, 의존적 경향이 강함.
- 장애여성의 학대방지를 위한 「UN장애인권리협약」 전문 q 및 제16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제2항에 상응하는 법령 및 정책이 부재함.
- 따라서 장애여성의 '여성'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장애인 복지를 실행해야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,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.

1)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2013년~2015년 3년간 상담건수를 기초로 증가폭을 살펴보면, 장애남성이 2.06배인 데 비해 여성은 2.23배로 더 높음. 전국 기준으로 여성 4,552건, 남성 8,068건으로 각각 전체 상담건수의 33.7%, 59.7%로 나타남. 성별 미상인 경우가 895건(6.6%)임. 2015년 자료는 2013년 및 2014년 지역별·성별 상담건수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2014.12.8. 이전 집계된 2014년 자료를 기초로 합산함.

2) 2015년 신체자유권리 관련 상담은 지적 장애인의 전체 상담건수의 38.0%(889건), 자폐성 장애인의 전체 상담건수 중 50.3%(97건), 정신 장애인의 전체 상담건수 중 22.5%(85건)를 기록함.

3) 보건복지부의 「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」에서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'참는다', 또는 '몰라서 그냥 넘어간다'로 응답한 장애여성의 비율이 각각 46.1%, 16.3%였음.

## 2 연구 목적 및 목표

- 서울시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- 특히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신체적·성적 학대·방임 및 유기 사례를 중심으로, 연령, 발생장소, 가해자 등 학대피해의 내용을 '장애'와 '여성'의 두 가지 취약 특성을 지닌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관련 조례의 제·개정과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II. 공통 요청 내용

### 1 3개 기관 2013년~2015년 누적상담통계 통일서식 구성

- 연구방법으로서 변인별 학대피해 지형 파악을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대표적 기관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,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,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의 2013년~2015년 누적상담통계자료를 통일적 형식으로 재구성하여, 성별·연령·학대사례 발생장소·학대 유형·가해자 등 변인을 종합한 학대피해 지형을 그리고자 함.
- 이를 위하여 요청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 - '2013년~2015년 장애인 학대 관련 상담사례의'
    1. 담당기관
    2. 상담신청일, 상담신청자(장애인 기준), 사례발생 자치구 및 동
    3. 장애인의 성별, 연령, 현 거주지(주택 또는 거주시설), 재정적 환경 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)
    4. 장애인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
    5. 학대행위자, 학대발생장소(가정, 학교, 직장, 거주시설 등)
    6. 학대유형(대분류, 소분류)
    7. 학대지속기간 또는 횟수
    8. 후속조치, 후속조치 종료일

## 9. 타 기관 이송 여부 및 이송 기관

※ 첨부문서 '01\_통계자료 서식2' 참조

(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해당 내용을 협조해주시면, SPS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유사하게 입력할 예정입니다.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주세요.)

## III. 통계자료 서식(예시) 설명

### □ 상담 관련 정보

- 담당기관 : 자료 제공 기관명
- 상담신청일 : 최초 상담신청일
- 상담신청자 : 장애인 기준으로 판단
  - 예시)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 → 본인
  - 장애인의 어머니가 신청 → 어머니
  -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종사자 → 거주시설 종사자
- 사례발생 자치구 및 동 : 사례발생장소의 행정주소
  - 예시)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 18 → 동작구, 대방동

### □ 장애인 관련 정보

- 성별 : 남, 여로 구분
- 연령 : 만 나이
- 장애유형 : 15개 법정유형 중 해당 장애유형(중복장애의 경우 주된 장애)
- 장애정도 : 1~6급 중 해당 장애정도(중복장애의 경우 주된 장애의 정도)
- 현 거주지 : 자택, 거주시설로 구분
- 재정적 환경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

### □ 학대 관련 정보

- 학대행위자 : 해당 행위를 한 자(상담신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

기준으로 판단, 다수인 경우 다수임을 기재)

- 학대발생장소 : 가정, 학교, 직장, 거주시설 등 구체적 기재
- 학대유형 : 대분류 및 소분류는 아래 표와 같음

대분류	신체적 학대	성적 학대	심리적 학대	재정적·물질적 학대	방임·유기
소분류	폭행	성폭행	모욕,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	절도	식사 등 영양공급 불충분
	신체적 체벌	성추행	따돌림, 무시	사기	난방, 청결 등 생활환경 부적절
	낙태강요, 불임시술	성매매, 성적 착취	협박, 강요	횡령, 배임	의약품 부족
	부적절한 건강관리	음란행위	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의 차별	임금체불	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 불급여 상태 방치
	감금	기타	자기결정권 침해	저임금	교육 서비스 결여
	기타		기타	강제노동 명의로용 기타	기타

- 학대지속기간 또는 횟수 : 행위자의 해당 행위 지속기간, 지속기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횟수로 기재

**□ 후속조치 관련 정보**

- 후속조치 : 상담 후 조치 내용(학대사태가 아니거나 상담자가 원하지 않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)
- 후속조치 종료일 : 소송 등의 종료일, 타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이송일(종료되지 않은 경우 '진행 중'으로 기재)
- 타 기관 이송 여부 : 자체, 이송으로 구분
- 이송 기관 : 타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이송된 기관명